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



구 미 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

의안번호	제 호
의결년월일	

제출년월일 : 2018.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 탄소성형부품 상용화 인증센터 구축 변경

2017년 4월 탄소성형부품 상용화 인증센터 구축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받은 건으로서, 장비구축 공간이 부족해 부지 추가매입 및 건축 연면적 증가로 신축 규모를 확대 변경코자 함.

○ 학서지 생태공원 조성

학서지와 천생산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한 학서지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건강한 생태휴식처를 제공코자 함.

○ 원호배수지 증설에 따른 공유재산 교환

고아읍 일대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한 원호배수지 증설사업의 배수지 설치 예정지인 국방부 국유지와 현재 고아부대 예비군 훈련장으로 무상사용 중인 사유지 2필지를 교환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꾀하고자 함.

○ 무골 소규모하수도시설 설치

지역주민의 공중위생 향상과 농업용수, 하천 오염방지를 위해 무을면 무이리(무골)일원 생활하수 정화처리를 위한 소규모하수도시설을 설치코자 함.

2. 주요내용

【취득재산】

□ 탄소성형부품 상용화 인증센터 구축 변경

《 당 초 》

- 위 치 : 구미국가산업단지 하이테크밸리 10-1블럭
 - ※ 지번 변경(사업부지 위치 변동 없음) 10-1블럭 → 8-1-1블럭
- 대 상 : 토지 6,612m², 건물 지상4층/지하1층, 연면적 8,600m²
- 기준가격 : 10,780백만원
 - 토 지 : 1,730백만원(하이테크밸리 분양가)
 - 건 물 : 9,050백만원(건축비)
- 사업기간 : 2017년 ~ 2019년
- 주요시설
 - 탄소성형부품 상용화 인증센터 건립
 - 시험 생산 및 신뢰성 분석·평가·인증 시스템 구축

《 변 경 》

- 위 치 : 구미국가산업단지 하이테크밸리 8-1-1, 8-1-2블럭
- 대 상 : 토지 10,500m², 건물 지상4층/지하1층, 3개동, 연면적 9,695m²
장비 19종 구축 ※ 시험생산동 2동 추가
- 기준가격 : 36,660백만원
 - 토 지 : 2,750백만원(하이테크밸리 분양가)
 - 건 물 : 9,110백만원(건축비)
 - 장 비 : 24,800백만원(구축비)
- 사업기간 : 2017년 ~ 2021년
- 주요시설
 - 탄소성형부품 상용화 인증센터 건립
 - 시험 생산 및 신뢰성 분석·평가·인증 시스템 구축

□ 학서지 생태공원 조성

- 위 치 : 구미시 신동 학서지 일원
- 대 상 : 토지 19필지 30,318m², 공원 52,826m²
- 사업기간 : 2013년 ~ 2020년
- 기준가격 : 16,678.4백만원
 - 토 지 : 678.4백만원(공시지가)
 - 공 원 : 16,000백만원(시설비)
- 사업내용 : 생태탐방로, 생태습지원, 수변전망대, 편의시설 등

□ 원호배수지 증설에 따른 공유재산 교환

- 위 치 : 구미시 고아읍 송림리 산51-2
- 대 상 : 토지 11,484m²
- 기준가격 : 71백만원(공시지가)

□ 무골 소규모하수도시설 설치

- 위 치 : 구미시 무을면 무이리 139-1번지
- 대 상 : 토지 952m², 건물 지상1층 / 연면적 38.76m²
소규모마을하수처리시설 1식(시설용량 : 45m³/일)
- 기준가격 : 3,168백만원
 - 토 지 : 25백만원(공시지가)
 - 건 물 : 94백만원(시설비)
 - 하수처리시설 : 3,049백만원(시설비)
- 사업기간 : 2018년 ~ 2019년
- 주요시설
 - 소규모마을하수처리시설(Q=45m³/일), 하수관로 L=2.7km

【처분재산】

☐ 원호배수지 중설에 따른 공유재산 교환

- 위 치 : 구미시 고아읍 송림리 산50-3, 산50-4 (2필지)
- 대 상 : 토지 11,306m²
- 기준가격 : 71백만원(공시지가)

3.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백만원)

구 분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27건	115,806.76 2식	56,577.4
	1.매입	토지 건물 기타	21건	41,770	3,453.4
	2.교환 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1건	11,484	71
	3.기타 취득	토지 건물 기타	2건 3건	9,733.76 52,819 2식	9,204 43,849
처분	계		2건	11,306	71
	4.매각	토지 건물 기타			
	5.양여	토지 건물 기타			
	6.교환 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2건	11,306	71

취득 및 처분 재산목록(총괄)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백만원)

구분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매각 시기	사 유	재산 소유자	비 고	
	재산구분	소 재 지	수 량(㎡)						
총계				56,577.4					
소계				36,984.5					
취득	토지	당초	구미국가산업단지 하이테크밸리 10-1블럭	6,612	1,729	2017년	탄소성형부품 상용화인증센터 구축	한국 수자원공사	매입
		변경	구미국가산업단지 하이테크밸리 8-1-1, 8-1-2블럭	10,500	2,750	2017~ 2020년	"	"	"
	건물	당초	구미국가산업단지 하이테크밸리 10-1블럭	8,600	9,050	2019년	탄소성형부품 상용화인증센터 구축	구미시	신축
		변경	구미국가산업단지 하이테크밸리 8-1-1, 8-1-2블럭	9,695	9,110	2018~ 2021년	"	"	"
	기타		구미국가산업단지 하이테크밸리 8-1-1, 8-1-2블럭	1식	24,800	2018~ 2021년	탄소성형부품 상용화인증센터 장비 구축	구미시	신설
	토지		구평동 95-1	565	20.3	2019년	학서지 생태공원 조성	한국 농어촌공사	매입
	"		구평동 95-3	4,386	140.4	"	"	"	"
	"		구평동 96-3	3,567	114.1	"	"	"	"
	"		구평동 150-1	283	5.7	"	"	"	"
	"		구평동 150-3	223	4.5	"	"	"	"
	"		구평동 151-6	545	4.5	"	"	"	"
	"		구평동 880	170	5.4	"	"	"	"
	"		신동 616	1,500	4.9	"	"	"	"
	"		신동 616-2	183	0.6	"	"	"	"
	"		신동 616-3	1,095	3.5	"	"	"	"
	"		신동 616-4	4,877	15.8	"	"	"	"
	"		신동 616-5	427	1.4	"	"	"	"
	"		신동 622	294	1	"	"	"	"
	"		신동 622-2	726	2.4	"	"	"	"

구분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 매각 시기	사 유	재산 소유자	비 고
	지목	소 재 지	수 량					
소계				19,592.9				
취득	토지	신동 643-2	132	0.4	2019년	학서지 생태공원 조성	한국 농어촌공사	매입
	"	신동 647	8,667	28.1	"	"	"	"
	"	신동 647-2	1,267	4.1	"	"	"	"
	"	신동 652	466	1.5	"	"	"	"
	"	신동 659-1	945	319.8	"	"	"	"
	기타	구평동 95-1외 47필지	52,819	16,000	2020년	"	구미시	신설
	토지	고아읍 송림리 산51-2	11,484	71	2018년	원호배수지 중설에 따른 공유재산 교환	국(국방부)	교환
	토지	무을면 무이리 139-1	952	25	2018년	무골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경상북도 교육청	매입
	건물	"	38.76	94	2019년	"	구미시	신축
	기타	"	1식	3,049	"	"	"	신설
총계			11,306	71				
처분	토지	고아읍 송림리 산50-3	8,430	53	2018년	원호배수지 중설에 따른 공유재산 교환	구미시	교환
	"	고아읍 송림리 산50-4	2,876	18	"	"	"	"

위 치 도

□ 탄소성형부품 상용화 인증센터 구축

○ 소재지 : 구미국가산업단지 하이테크밸리 8-1-1, 8-1-2블럭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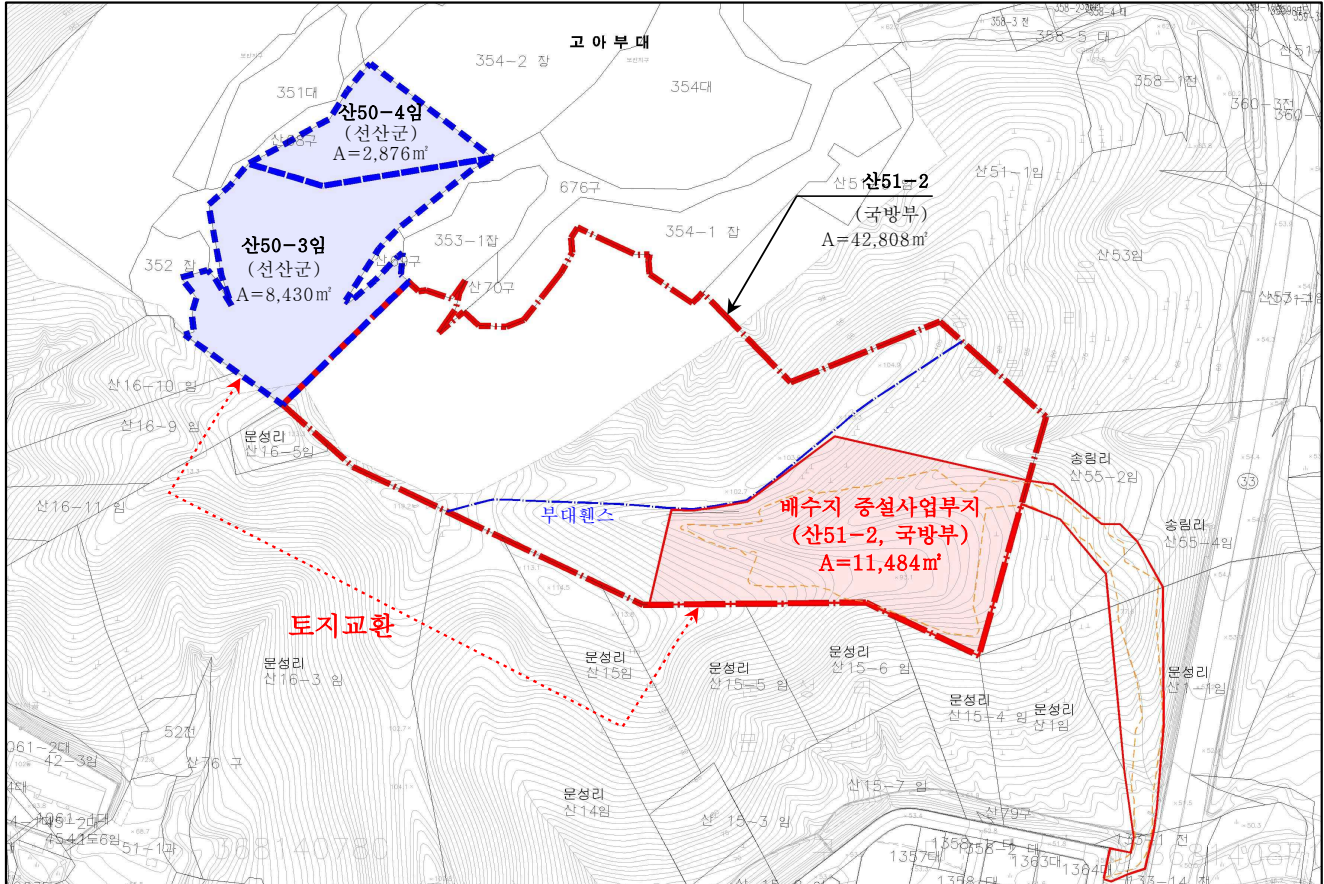
□ 학서지 생태공원 조성

○ 소재지 : 구미시 구평동 95-1번지 외 47필지(학서지 일원)



□ 원호배수지 증설에 따른 공유재산 교환

○ 소재지 : 구미시 고아읍 송림리 산51-2, 산50-3, 산50-4



□ 무골 소규모하수도시설 설치

○ 소재지 : 구미시 무을면 무이리 139-1번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 5. 생략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② 생략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중요재산, 공공시설의 취득·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 ① 법 제39조 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을 말한다.

② ~ ⑤ 생략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 ③ 생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 ⑦ 생략

소관 실 · 과		회 계 과
입 안 자	과 장	이 관 응
	담 당	이 재 균
	담 당 자	전 유 향 (480-5072)